평생교육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교육원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평생교육정신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평생교육이념과 대학의 사회봉사기능을 구현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28., 2014.10.16.)

제2조(명칭) 본 교육원은 경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개정 2011.7.22.)

제3조(소재지) 교육원의 주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4번지에 두며, 부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번지 소재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내에 둔다. (개정 2006.2.28., 2014.10.16.)

제4조(과정 및 정원) 교육원에는 성인교육, 비정규교육, 계속교육, 위탁교육, 연수교육, 세미나, 실습교육, 전공심화교육 등의 전문교육과정과 학점은행제 학위취득과정, 원격교육과정을 두며, 교육과정의 내용과 정원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8.31., 2006.2.28. 2010.12.29., 2014.10.16.)

제4조의2(특별교육과정) ① 교육원내에 특별교육과정으로 보육교사교육원, 원격교육원 등을 둔다. (개정 2010.12.29., 2014.10.16., 2015.12.14.)

② 보육교사교육원의 운영세칙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1.8.31, 개정 2006.2.28.)

③ 원격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2.29.)

제2장 수강등록

제5조(등록시기) 교육원의 각 과정 수강등록 시기는 개강 전 소정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14.10.16.)

제6조(수강자격) 본 교육원에 수강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경력 및 학력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선발방법) 본 교육원의 학생 선발은 각 교육과정별 입학원서 접수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 및 면접고사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

제8조(교육비) ① 교육원의 학생은 각 과정 등록시에 소정의 교육비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8., 2014.10.16.)

② 이미 납입한 교육비 및 기타 납입금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6.2.28., 2011.2.25., 2014.10.16.)

③ 각 교육과정의 교육비는 매학기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8.2.)

제3장 수업연한, 수업일수, 교육과정, 이수과목, 수료 (개정 2014.10.16.)

제9조(수업연한) 교육원의 수업연한은 1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수업연한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06.2.28., 2011.7.22.,

2014.10.16.)

제10조(교육과정) 교육원의 각 교육과정은 학기별로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2.28., 2011.7.22.)

② (삭제 2006.2.28.)

제11조 (조삭제 2006.2.28.)

제12조(수료 및 학위수여) ① 교육원에서는 각 교육과정에 설치된 강좌를 이수한 자에 대해서 소정의 수료증(별지 서식 제1호)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1.8.31., 2006.2.28., 2014.10.16.)

② 학점은행제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총장 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1.8.31.)

제4장 공개강좌

제13조(공개강좌) 교육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공개강좌의 목적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설할 때마다 원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6.2.28.)

제5장 포상・징계

제14조(포상) 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될 만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제15조(징계) 원장은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11.7.22.)

제6장 장학금

제16조(장학금) ①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6.)

②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전담교수 또는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2.28., 2014.10.16.)

③ 장학금 지급 세부사항은 “장학금 지급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2.14.)

제7장 직제 및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제17조(직제) 교육원에는 원장, 부원장, 교학팀장, 행정직원, 연구(보조)원, 조교, 학습상담사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전담교수, 주임교수, 시간강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08.31, 2006.02.28, 2006.07.06., 2014.10.16., 2015.12.14.)

1.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하며 평생교육원을 대표하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를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1.7.22., 2014.10.16., 2016.2.23.)
2.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하며 교육원 프로그램 개발 및 위탁교육 유치를 주업무로 하고 원장 업무를 보좌한다. (개정

2016.2.23.)
3. (삭제 2006.2.28.)
4. (삭제 2006.2.28.)
5.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주임교수 및 시간강사는 평생교육원 교원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8.31., 2011.7.22., 2014.10.16.)
6. 주임교수, 시간강사 및 학습상담사는 평생교육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1.08.31., 2011.07.22., 2015.12.14.)
7. (삭제 2006.2.28.)
8. (삭제 2006.2.28.)
9. 연구(보조)원은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와 교육과정 운영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5.12.14.)
10. 학습상담사는 학습자의 학업상담 및 취업상담을 담당하며,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을 위해 면담, 온라인 상담, 유선 상담을 진행한다. (신설 2015.12.14., 개정 2017.8.2.)

제18조(위원회) 본 교육원에는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원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1.07.22.)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6.2.28.)
3.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6.2.28.)
5. 기타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11.7.22.)

제21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2조(시행세칙) 이 원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준용규칙) 이 원칙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8장 재정

제24조(재정) ① 본원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의 회계년도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2.28.)

②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5.12.14.)
1. 수강료 수입금
2. 개인 또는 기관의 후원금
3. 기타 교육사업 수입금

제9장 보칙

제25조(기타) 기타 교육원의 운영과 학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2.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원칙은 199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원칙은 199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원칙은 199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원칙은 199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원칙은 1993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원칙은 199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원칙은 199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원칙은 200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교육원 겸임교수에 대한 경과조치) 원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사회교육원 겸임교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기구의 특별교육과정으로의 전환 운영 등) 이 개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운영되던 부설기구로 특별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며, 관광교육원은 폐지하고, 스타니스랍스키연기원은 명칭을 연기원으로 변경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개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경기어린이집 운영세칙, 관광교육원 운영세칙과 관광교육원 실습장 산그림 운영세칙, 도자공예교육원 운영세칙, 스타니스랍스키연기원 운영세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2.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8.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제1호]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과정 (0000.00.00~0000.00.00)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장 0 0 0

위의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경기대학교 총장 0 0 0

평생교육원 교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전담교수, 주임교수 및 시간강사의 자격, 임용절차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2., 2015.12.14.)

제2조(자격) ① 평생교육원 전담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개정 2011.7.22.)

1.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단, 과정의 성격에 따라 예외를 원장이 인정할 수 있다.)
2. 평생교육원에서 1개 이상의 과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과정을 책임운영 및 발전 계승시킬 수 있는 자 (개정 2011.7.22.)
3. 평생교육원에서 주 6시간 이상 강의가 있는 자 (개정 2011.7.22.)
4. 기타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공헌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1.7.22.)

②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및 시간강사의 자격은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평생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7.22., 2015.12.14.)

제3조(임용절차) ① 평생교육원 전담교수는 평생교육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1.7.22.)

②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및 시간강사는 평생교육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8.16., 2011.7.22., 2015.12.14.)

제4조(임용기간) ① 평생교육원 전담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연임의 시기는 매 학기초로 한다. (개정 2011.7.22.)

②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및 시간강사의 위촉기간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6.8.16., 2011.7.22., 2015.12.14.)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및 주임교수, 시간강사에 임용 될 수 없다. (개정 2011.7.22., 2015.12.14.)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8.17.)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제6조(임무) 평생교육원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7.22., 2015.12.14.)

1. 전담교수는 6시간 이상의 강의를 원칙으로 하며, 학사행정 전반을 담당한다.
2. 주임교수는 전담교수를 보좌하여 과정별 학사행정을 담당한다.
3. 시간강사는 교육원에서 지정하는 교육과정 강의를 담당한다.

제7조(평가 및 등급) 평생교육원 전담교수의 경우 재임용 시에 학습자 유치 실적, 성실도 및 사명감 등을 평가하여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평가 및 등급에 관한 사항은 [별표1]에 따른다.
[본조삭제 2015.12.14., 본조신설 2018.1.25.]

제8조(처우) ① 경력 및 학습자 수 등 본 교육원에 대한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원 전담교수의 급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고, 주임교수는 부정기적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22., 2015.12.14.)
② 평생교육원 시간강사의 강사료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2.)
③ (개정 2011.7.22., 항삭제 2015.12.14.)

제9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8.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6.8.16., 2007.9.10., 2011.2.25., 2011.7.22., 삭제 2015.12.14., 신설 2018.1.25.)

평 생 교 육 원
전 담 교 수 평 가 표

소속 : OOOOOOO 계열
성명 : O O O (000000-0)

항목	학습자 유치 실적	성실도 및 사명감	교육 및 연구	강의평가	교육경력
점수					
계					

① “학습자 유치 실적” 평가기준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세부 평가표를 따른다.
② “성실도 및 사명감”은 수강생 및 다른 교·강사들과의 유대관계와 본교의 애교심을 반영하고 평생교육원장이 평가한다.
③ “교육 및 연구” 평가기준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세부평가표에 따른다.
④ “강의평가” 평가기준은 전담교수의 학기 별 담당 학습과정의 백분율의 평균값으로 세부평가표를 따른다.
⑤ “교육경력”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강사자격에 관한 규정’의 적합도에 따라 세부평가표를 따른다.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평가등급표

등급 / 항목	A 등 급	B 등 급	C 등 급	D 등 급	E 등 급
평가점수 계	80점 이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50점 이상 ~60점 미만	50점 이하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경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규정 제 1장 제 4조에 의거 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이하 “본 과정”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전공)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 범위 내에서 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이 정한다.

제3조(모집인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한 인원으로 원장이 정한다.

제2장 입학

제4조(학습자 모집) 매학기 전공 또는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단위로 학습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7.8.2.)

제5조(지원자격) 본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고등학교 졸업자

②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6조 (조 삭제 2017.8.2.)

제7조 (조 삭제 2017.8.2.)

제8조(전형방법) 지원자의 전형방법 및 시기는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8.2.)

제3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9조(등록) ① 학습자는 매학기 교육과정 시작일 하루 전까지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학습자는 개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추가 등록할 수 있으며 학습비는 수강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7.8.2.)

②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원장의 승인 하에 교육비를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의 시기와 횟수는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7.8.2.)

제10조(학습비의 반환) 학습비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2항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환불조치 한다. (조명변경 및 개정 2017.8.2.)

제11조(수강신청 및 정정) ① 학습자는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교육원의 학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수강신청을 해야한다.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이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한 기일 내 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수업

제12조(교육과정) ① 본 교육과정은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으로 한다.

②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이라 함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시하는 표준교육과정 중 교육원이 평가인정 받은 교과목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③ 교육과정 시작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학습자의 학적부를 생성·관리하고, 학적에 필요한 자료들과 함께 영구 보존한다. (신설 2017.8.2.)

제13조(학점인정) ① 본 과정에 개설된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중 성적평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②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 연간 42학점까지로 한다.

③ 교육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의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105학점, 전문학사학위과정 60학점으로 제한한다.

제14조(수업관리) 교·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① 학사일정 준수

② 강의계획서에 의한 강의

③ 수업결손 및 조기종강 불허

④ 강의시간 임의변경 및 변칙운용 불허

⑤ 조교, 대리 교·강사 등에 의한 수업 및 실험·실습 금지

⑥ 결강일 및 보강일을 출석부에 기록

⑦ 평가인정 내용에 따른 강의진행 (신설 2017.8.2.)

⑧ 학습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 (신설 2017.8.2.)

제15조(휴강과 보강) ① 법정 공휴일 또는 학사일정에 따른 공식적인 휴강 외에는 휴강 할 수 없다.

② 교강사가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휴강을 할 경우 사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보강 계획서[서식 4]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종강 후 1주일 이내에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

제16조 (학습자의 출·결석) ① 교강사는 매주 또는 매시간 출석을 점검하고 출석부에 출결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지각, 조퇴 3회시에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③ (삭제 2017.8.2.)

④ 출석성적 및 출석률은 산정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17.8.2.)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습자는 교육원에 공결승인신청서[서식5]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의 승인 하에 해당 교과목의출석을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8.2.)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가족의 사망 (개정 2017.8.2.)
2.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사람 (개정 2017.8.2.)
3.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 회합
4. 각종 국가자격시험 및 (공인)대회출전
5. 본인의 결혼
6.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7. 기타 원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제17조(성적 평가) ① 과목별 성적은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출석20%, 과제 10%, 수업기여도 10%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진다.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
A□	90~94	4.0
B□	85~89	3.5
B□	80~84	3.0
C□	75~79	2.5
C□	70~74	2.0
D□	65~69	1.5
D□	60~64	1.0
F	00~59	0.0

③ 이수하는 교과목의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정기평가, 수시평가, 추가평가로 구분하며 정기평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7.8.2.)

④ 성적평가에 있어 과오 또는 부정행위자에게는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⑤ 학습자가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입대 등으로 인해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중간고사 및 과제물 평가로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⑥ 장애를 가진 시험 대상자의 경우 정해진 시험시간의 1.5배를 부여한다.

⑦ 천재지변 등 공결사유로 정기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는 추가시험인정원[서식 6]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성적은 B+ 등급 이하로 한다. (신설 2017.8.2.)

⑧ 수시평가는 과제물 평가 및 학습자의 수업기여도 평가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8.2.)

⑨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이거나 실습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교육과정에서는 절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8.2.)

⑩ 성적평가 결과에 따른 열람 및 정정은 종강 후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신설 2017.8.2.)

제18조(강의평가) ① 강의평가는 각 교과목별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자를 대상으로 무기명 실시한다.

② 강의평가 대상 교강사 중 교육원 최상위자 2~3인 또는 과정별 최상위자 1인에게 강의평가 우수 표창을 원장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교강사에 대해서는 차학기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원장의 승인 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강사는 재임용할 수 있다

제5장 학위수여

제19조(학위수여) ①교육원에서 수강한 학생들에 대한 학위수여요건 및 제반사항은 경기대학교 학칙 제18장 학점은행제에 따른다.

② 총장명의의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해서 소정의 학위증(서식 제1호) 및 학위증명서(서식 제2호)를 수여 할 수 있다.

제6장 학생활동

제20조(학생활동의 승인) 학생 또는 학생단체는 교내·외 행사 , 집회, 간행물의 발간과 배포·게시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사전에 평생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행사신청서 작성

② 소속 전공 전담교수의 서명

③ 평생교육원장의 승인

제21조(학생활동에 관한 전담교수의 의무) 교육원 전담교수는 소속전공의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제20조에서 정한 활동을 하는 경우 그 활동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7장 입영기일 연기

제22조(수강생 입영기일연기) 교육원에서 수강 중인 학생의 입영기일 연기에 대한 사항은 병역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129조, 동법 시행규칙 제87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23조(준용) 이 운영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8.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8.2.)

학습비 반환기준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과오납의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5/6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별표 2] (개정 2018.1.25.)

출석률 산정기준

<table>
<tr><th colspan="3">3시수 강좌</th><th colspan="3">4시수 강좌</th><th colspan="3">5시수 강좌</th></tr>
<tr><th>출석
시수</th><th>출석률
(%)</th><th>출석
점수</th><th>출석
시수</th><th>출석률
(%)</th><th>출석
점수</th><th>출석
시수</th><th>출석률
(%)</th><th>출석
점수</th></tr>
<tr><td>45</td><td>100</td><td>20</td><td>60</td><td>100</td><td>20</td><td>75</td><td>100</td><td>20</td></tr>
<tr><td>44</td><td>98</td><td rowspan="2">19</td><td>59</td><td>98</td><td rowspan="3">19</td><td>74</td><td>99</td><td rowspan="4">19</td></tr>
<tr><td>43</td><td>96</td><td>58</td><td>97</td><td>73</td><td>97</td></tr>
<tr><td>42</td><td>93</td><td rowspan="2">18</td><td>57</td><td>95</td><td>72</td><td>96</td></tr>
<tr><td>41</td><td>91</td><td>56</td><td>93</td><td rowspan="3">18</td><td>71</td><td>95</td></tr>
<tr><td>40</td><td>89</td><td rowspan="2">17</td><td>55</td><td>92</td><td>70</td><td>93</td><td rowspan="4">18</td></tr>
<tr><td>39</td><td>87</td><td>54</td><td>90</td><td>69</td><td>92</td></tr>
<tr><td>38</td><td>84</td><td rowspan="2">16</td><td>53</td><td>88</td><td rowspan="3">17</td><td>68</td><td>91</td></tr>
<tr><td>37</td><td>82</td><td>52</td><td>87</td><td>67</td><td>89</td></tr>
<tr><td>36</td><td>80</td><td>15</td><td>51</td><td>85</td><td>66</td><td>88</td><td rowspan="3">17</td></tr>
<tr><td colspan="3" rowspan="6">이하 과락</td><td>50</td><td>83</td><td rowspan="2">16</td><td>65</td><td>87</td></tr>
<tr><td>49</td><td>82</td><td>64</td><td>85</td></tr>
<tr><td>48</td><td>80</td><td>15</td><td>63</td><td>84</td><td rowspan="3">16</td></tr>
<tr><td colspan="3" rowspan="3">이하 과락</td><td>62</td><td>83</td></tr>
<tr><td>61</td><td>81</td></tr>
<tr><td>60</td><td>80</td><td>15</td></tr>
<tr><td colspan="3">이하 과락</td></tr>
</table>

[서식 제1호] (개정 2015.12.14., 2017.2.7.)

제 0 0 0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와 같이 학사자격을 갖추었으므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69조에 따라 이 증서를 수여함.

대 학 :
학과(전공) : 0 0 학 전공, 0 0 학사

년 월 일

경 기 대 학 교 총 장

학위번호 : 경기대-학점-0000-000

[서식 제2호] (개정 2017.2.7.)

학 위 증 명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학 번 :

소 속 대 학 :

학 위 명 :

전 공 :

학위취득일 :

학 위 번 호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대 학 교 총 장

[서식 제3호] (신설 2017.2.7.)

학 위 수 여 예 정 증 명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학 위 명 :
전 공 :
학위취득예정일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대 학 교 총 장

[서식 제4호] 휴·보강 계획서 (신설 2017.8.2.)

휴 · 보 강 계 획 서

학습과목명	휴 강					보 강				
	월일	요일	교시	강의실	교·강사명	월일	요일	교시	강의실	교·강사명

붙임 : 휴·보강 사유 관련 증빙서류 1부.

위와 같이 휴·보강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귀하

[서식 제5호] 공결 승인신청서 (신설 2017.8.2.)

공 결 승 인 신 청 서

학습과정명		담당 교·강사	
성 명		연락처	

o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o 신청사유 :

붙임 : 공결사유 증빙서류 1부.

위와 같이 공결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귀하

[서식 제6호] 추가시험인정원 (신설 2017.8.2.)

추 가 시 험 인 정 원

다음 학습과정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에 추가시험인정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 목 명	담당 교·강사	시험구분	추가시험사유

붙임 : 추가시험 신청 사유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성 명 (인)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귀하